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개선방안

강동범* · 김우준**

요 약

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으로는 경비지도사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실시 되어오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사항 중에서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변보호사의 자격 검증을 엄격히 하여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할 시기에 봉착하였다고 판단되어 신변보호사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단순하고 비교적 기초적인 실기시험 평가 항목의 난이도를 다양화 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술은 합기도의 기술분야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어 각 무도분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에 있어 지인인 경우가 많아 객관성확보차원에서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전문성을 고양시켜나가기 위해 관련기관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mprovement Plans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Certification Performance test System

Kang Dong Beom* · Kim Woo Jun**

ABSTRACT

At the present moment when around 6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there are security instructor and protection specialist guard as government official recognition qualification. This study discussed problems of secondary performance test system among qualification certification item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as government official recognition qualification since 2013.

Current qualification certification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is composed of primary academic test and secondary performance test. Since it is estimated that it is high time to increase clients' satisfaction and public reliability through strict qualification certification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intended to suggest.

First, it is a plan to divide and diversify difficulties of performance test evaluation events. Second, it is a plan to diversify evaluation criteria of performance test. Third, it is a plan to make criteria for selecting specialized performance test evaluation committee. Fourth, it is a new plan of exclusion system to avoid any relation between performance test evaluation committee and applicants.

In this respect,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improve specialty of qualification certification of performance test system for protection specialist guard.

Key words : Private Security, Government Official Recognition Qualification, Protection Specialist Guard, Performance Tes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접수일(2016년 2월 1일), 게재확정일(2016년 2월 22일)

* 동국대학교/법학과

** 세명대학교/경찰행정학과

1. 서 론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60여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변보호는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수익성에 따라 치안주체가 다양화 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격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경찰통계연보를 중심으로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말 기준 경비원수는 150,543명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수도 4,287개의 업체로 최근 10년간 2배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체 수는 538개의 업체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5,040개의 전체업종 수 가운데 약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괄목할 만한 민간경비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경비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아직 고객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러한 인식에 터 잡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적 처우 또한 그리 바람직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경비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2]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는 친밀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이제 산업의 형태로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활동 영역이 매우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은 양적인 측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장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시장의 활성화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의 기술적인 발달과 더불어서 경비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뢰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질적인 발달도 필요하다.[3]

이와 같이 민간경비분야의 질적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2차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사)한국경비협회의 내부자료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신변보호사 개념

경호를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변보호는 협의의 의미로써 경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서 신변보호는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경호원들이 주변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근접 호위 활동을 함으로써 위해자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광의의 의미로서 경호란 경호대상자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근접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근접호위 활동에 일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경비적 개념이 추가된다. 경호대상자를 보호함에 있어 근접호위 활동만이 아닌 경호대상자의 행동반경에 따른 물리적 보호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환경에서의 예방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4]

광의의 법률적 정의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법률적 정의로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 행위는 경호대상자의 생명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호위적 성격이 주(主)가 되는 업무수행활동에 있어 특정한 시설 및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5] 따라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신변보호사란 “신변보호 의뢰자를 타인 또는 외부로부터 생명 및 신체의 위해요소

를 제거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2.2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제도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은 (사)한국경비협회의 주관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다. 2006년 제1회 자격시험부터 2012년 제7회 자격시험은 민간자격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사)한국경비협회의 국가공인자격 승인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자격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인¹⁾되면서 2013년 제8회 시험부터 국가공인 자격 제1회 시험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6]

2006년 제1회부터 2012년 제7회 자격시험까지 민간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는 국가공인자격 재검정 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총 3차례 실시되었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의 주관사인 (사)한국경비협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 1회, 총 3회에 걸쳐 재검정(완화)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재검정(완화) 시험에서는 2차 실기 시험은 면제하고 1차 학과시험만 실시하여 평균 60점 이상(1과목 40점 이상)인 자에게 국가공인 자격을 발급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으로는 2015년 국가공인 제6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행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만 18세 이상인 자, 둘째,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셋째,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이다.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1·2차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신변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제도에 있어 일부면제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한 사람은 1차 학과시험 중 ‘민간경비론’ 한 과목과, 2차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험방법은 1차 학과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분류되어 실시되며, 하루에 모두 실시하고 있다. 1차 학과시험은 ‘민간경비론 20문항’, ‘경비업법 30문항’, ‘경호학 30문항’의 5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80분간 주어진다. 2차 실기시험은 2인 1조가 되어 ‘구분동작’과 ‘연속동작’으로 상황별 A, B형 기술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여기에서 구분동작, 연속동작에 해당하는 범인대응술 5수와 체포·연행술 5수로 진행된다. 시험시간은 우선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80분이 주어지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이 주어져 총 6시간 20분 동안 실시되고 있다. 이때 무도가산점은 경찰청 가산점에 한해 2·3단은 2점, 4단 이상은 4점을 실기시험 성적에 가산하고 있다. 합격기준은 1·2차 시험 각 과목 40점미만이 없어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표 1>은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2차 실기시험 평가기준이 되는 분류표이다.

<표 1>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평가 분류표

구성	상황별	A형 기술	B형 기술	동작
범인대응술	어깨 잡을때	목 밀기	팔굽돌리기	구분및연속
	먹살 잡을때	손목 안틀기	팔굽누르기	
	한속목 잡을때	평치밀기	팔굽틀기	
	안속목 잡을때	어깨로 팔굽밀기	손목바깥틀기	
	허리띠 잡을때	요골밀기	뒷덜미 당기기	
체포·연행술	앞에서 연행	엎어조이기	뒤로호미 팔당기기	구분및연속
	뒤에서 연행	앞으로호미 팔당기기	목감아 당기기	
	(칼)밑에서 찌를때	막고엎어 조이기	오금밀기	
	(칼)위에서 찌를때	목껴안기	팔굽뒤로 당기기	
	주먹 휘두를때	천돌누르기	양볼누르기	

※ 출처 : (사)한국경비협회자료를 본 연구자가 재정리

1) (사)한국경비협회는 직업능력 개발원에 신변보호사 자격을 2009년, 2010년, 2012년 총 3회에 걸쳐 국가공인자격으로 신청한 결과 2012년 12월 승인받게 되었다.

2.3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에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가 도입 된지 10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도입에서부터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태환·박대우(2005)[7]는 자격제도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첫째,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기간을 의무화하고, 둘째, 직무교육을 법제화해야 하며, 셋째,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황권(2011)[8]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위해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경비업계가 자격취득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하며, 셋째, 자격증의 활용실적이나 미비한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계원·서진석(2013)[9]은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이나 향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자격제도의 운영·관리체계의 체계통일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유인요인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격제도 본래 목적인 자질검증과 향상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범(2014)[10]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신변보호업자들이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것으로, 첫째, 배치시 신입교육면제 미인정, 둘째, 실무능력의 미숙, 셋째, 보수교육 미비, 넷째, 현장경험 우선, 다섯째, 자격증 취득의 불분명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업자들에 대한 경비법령령상의 제도적 지원, 둘째, 신변보호업의 특성에 맞는 신입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응시에 있어 일정 시간 실무 또

는 실기의 이수 시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훈(2014)[11]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운영개선방안을 위해 첫째,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 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법제를 도입해야 하며, 넷째,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해야 하며,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곤(2015)[12]은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 둘째, 영상관독시스템 도입, 셋째, 모든 자격시험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를 통해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강동범·김상진(2015)[6]은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신설, 둘째, 자격검정 일부면제기준의 확대방안, 셋째, 경력인정자 조건의 구체화,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의 축소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표2>는 선행연구내용에 따라 연구자를 분류해 보았다.

<표 2>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 주요 선행연구

연구내용	연구자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김태환·박대우 (2005)[7] 안황권(2011)[8]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정지운(2007)[13] 이상철·안성조 (2008)[14]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인식분석	김일곤(2012)[15] 박기범(2014)[10] 김일곤(2015)[12]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운영개선방안	김계원·서진석 (2013)[9] 이상훈(2014)[11] 강동범·김상진 (2015)[6]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부터 실태 및 문제점, 응시자들의 인식분석과 자격제도의 운영개선방안까지 두루 고찰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

도의 2차 실기시험 제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2차 실기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3.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3.1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운영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사)한국경비협회의 주관으로 2006년 처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 시험이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2급, 3급 합격자수는 5,847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2급, 3급을 통합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13년 국가공인자격 이후 합격자 수는 <표 3>에 서와 같이 694명으로 집계되었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회 총 3회에 걸쳐 재검정을 실시하여 국가공인 자격취득자 수는 더 많은 실정이다. 재검정(완화) 시험의 대상자는 기존 민간자격시험이었던 제1

<표 3> 신변보호사자격 연도별 취득현황²⁾

등급 회차	일자	2급				3급				합계			
		접수 (명)	응시 (명)	합격 (명)	합격 률 (%)	접수 (명)	응시 (명)	합격 (명)	합격 률 (%)	접수 (명)	응시 (명)	합격 (명)	합격 률 (%)
2006	11/25	293	286	274	95.8	528	519	489	94.2	821	805	763	94.8
2007	11/03	926	868	835	96.2	294	265	255	96.2	1,220	1,133	1,090	96.2
2008	11/15	1,308	1,209	1,109	91.7	103	99	95	96.0	1,411	1,308	1,204	92.0
2009	11/14	1,166	1,050	634	60.4					1,166	1,050	634	60.4
2010	11/06	707	622	501	80.5					707	622	501	80.6
2011	11/05	806	734	427	58.2					806	734	427	58.2
2012	11/10	861	784	534	68.1					861	784	534	68.1
2013	11/09	1,111	935	265	28.3					1,111	935	265	28.3
2014	11/08	471	452	196	43.4					471	452	196	43.7
2015	11/14	700	608	233	38.3					700	608	233	38.3
합계		7,649	6,940	4,775	66.3	925	883	839	95.0	8,574	7,823	5,614	69.4

* 출처 : (사)한국경비협회 내부 자료를 본 연구자가 재정리

2) 표에 제시된 합격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 값이다.

회 신변보호사 자격검정부터 제7회신변보호사 자격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재검정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다. 2013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196명, 2014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31명, 2015년 재검정 시험의 합격자는 20명으로 총 3회에 걸쳐 재검정 시험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의 수는 247명이다.

다음 <표3>은 재검정(완화) 합격자를 제외한 현재까지의 신변보호사자격 연도별 취득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3>에서와 같이 2013년 국가공인자격 이후 합격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합격률이 높아 자격검정의 역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 및 실기시험 감독을 엄격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2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실기시험의 문제점

3.2.1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난이도 및 단순화

현행 실기시험 평가항목은 범인대응술 10수, 체포·연행술 10수 중에서 각 5수씩 A, B형 기술로 나누어 구분동작과 연속동작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기시험 항목의 난이도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며, 맨손으로 범인을 대응하고 체포·연행하는 기술만 평가항목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장비(도구)를 사용하는 기술,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기술, 위해자가 여러 명일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현재 평가 항목만으로는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에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3.2.2 실기시험 평가기준의 획일화

실기시험 평가 시 평가기준이 획일화 되어 있어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신변보호사 실기시험과 가장 밀접한 운동종목을 선택하자면 합기도를 손꼽을 수 있다. 신변보호사 실기시험 평가기술과 합기도의 호신술 및 제압술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기도 술기 이 외에 태권도, 유도, 검도, 공수도 등 다양한 운동종목의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응시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평가 기준을 보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2.3 일반화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기준

현행 실기시험 평가위원은 (사)한국경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회에 의뢰하여 평가위원관리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본 연구자는 (사)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평가위원 양성자 교육모집 공고를 참고하였으며, 신변보호사 시험이 실시되었던 곳과 2015년 신변보호사 시험이 실시되는 대학에 문의하여 실기시험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현재 신변보호사 실기시험 평가위원은 무도별 공인 4단 이상의 소지자에 한하여 대학교수, 경찰관사범, 체육관사범, 각 무도 시범단 경력자를 선정한다고 나와 있을 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3.2.4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객관성 결여

실기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지인일 경우 객관성 결여의 의심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검정 제도는 평가위원의 객관성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사항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 실기시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실기평가위원이 응시자의 교수님이거나 체육관 관장 및 사범일 경우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기시험 평가에 있어 의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격검정 주관사인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묵인하고 있으며, 맹질식으로 “실기시험 평가복장은 소속 표시를 청테이프 등으로 가릴 것”이라고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시행공고에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4.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실기시험제도의 개선방안

4.1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난이도 구분 및 다양화 방안

실기시험 평가항목이 실제 실무하고는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고,[10] 실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난이도 조정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1]

현재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가장 큰 문제는 난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실무와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무에 있어서는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기술 및 위해자가 여러 명일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 상황에 따른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무와 연계된 범인대응술, 체포·연행술의 평가항목을 현행평가와 접목시켜 4개 분야 20수로 검정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 평가항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각 항목의 상황별 요소에 따른 기술의 난이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실무에 적용되는 기술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응시자의 실력을 다양하게 평가하여 우수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실기시험 평가항목의 난이도 구분 및 평가항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실기시험 평가기준의 다양화 방안

신변보호사 실기시험 평가항목인 범인대응술이나 체포·연행술의 경우 기존의 관련 무도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문제될 수 있다.[9]

현재 신변보호사 실기시험평가 항목은 합기도의 호신술 및 제압술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기도뿐만 아니라 태권도, 유도, 검도, 공수도, 특공무술 등 다양한 무도분야에서 실질적인 신변보호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우수한 기술들을 접목시켜 실기시험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교육기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실기시험평가 세부내용을 다양화 하여 평가기준안을 제시한다면 응시자 폭의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에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다.

4.3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기준 방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실기평가위원의

실기동작 미숙지, 배점 편차, 전문성, 주관적 판단이라는 객관성 결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실기평가위원의 양성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에 참여했던 참가자의 역량에 따라 기술의 이해, 숙지 등에 있어 편차를 발생케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심사에 있어 주관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실기평가위원 선발시 충분한 소양을 갖춘 평가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무료로 협회 주도의 연수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다수가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인력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12]

이와 같이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화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무도별 공인 4단 이상의 무도종류가 추상적이어서 무도별이 아닌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무도의 종류를 구체화 시켜 혼란의 요소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수로만 제시되어 있는 사항을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2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공역시 경찰, 경호, 스포츠(무도)분야로 신변보호 실기평가위원으로서 적합한 전공교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찰관 사범의 경력기간, 체육관 사범의 경력기간, 각 무도 시범단 경력자의 무도종류 및 경력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관사인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4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제척제도 신설방안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들의 인터뷰 내용 중 “감독관 전원이 경찰행정과 교수님이었던게 사실이라면 경찰행정과 학생들에게 더 잘 봐줬을 거 같다”는 사례로 보아 자격검정시험 운영의 공정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12]

실기시험 평가위원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기시험 평가위원을 선정할 시기에 해당 지역별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의 관계를 파악하여, 실기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학교, 학과 및 체육관 소속일 경우 실기시험 평가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전에 불공정한 심사의 우려를 해소하

고자 제척제도³⁾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제척제도를 신설한다면 객관화에 있어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제척제도 신설로 인한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응시지구별 응시자와 관련 있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제하거나 예비평가위원을 편성하는 자구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결 론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시작되어 세 번의 공인신청을 통해 2013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민간경비업 종사자들의 판단 지표가 되는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실질적인 신변보호업무를 위해 실기시험 비중을 높여 대중에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실기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단순하고 기초적이기 때문에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실기시험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배점역시 난이도별 편차를 두어 평가항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실기시험 평가기준이 합기도 기술에 국한된 것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응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여러 무도분야의 우수성을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평가기준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일반화 되지 않은 실기시험 평가위원제도를 전문화된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 유도, 합기도 중에서 4단 이상의 자격보유자,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2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경찰, 경호, 스포츠(무도)관련 학과의 전공자를 실기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 유도, 합기도분야의 경찰관 사범, 체육관 사범, 각 무도 시범단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안을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마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실기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기시험 평가위원과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 제척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단, 제척제도 신설로 인한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응시지구별 응시자와 관련 있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제하거나 예비평가위원을 편성해야 하는 한계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네 가지 개선방안을 통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제도가 더욱 전문성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자격발급 주체인 (사)한국경비협회에서는 실기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응시자들의 저변확대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14', 범신사, 2015.
- [2] 이상훈, "오경보 감소를 위한 '신별신고제도'의 평가와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제15권 제1호: 27-36, 2015.
- [3] 조민상·김원기, "민간경비원 사고 사례를 통한 재발방지 시스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1권 제3호: 163-179, 2014.
- [4] 송영남·김병찬, "민간경호원에 대한 경호무도교육 시스템 발전방안", 대한무도학회지 제12권 제3호: 327-342, 2010.
- [5] 김태민, "한국 민간경호업무 운용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 [6] 강동범·김상진,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 방안 -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융합보안학회지 제15권 제6호 제2권:

3) 형사소송법상 제척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적(피해자, 이해관계인, 이미사건에 관여)으로 규정해놓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기시험 평가위원이 불공평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응시자와 같은 학교, 학과 및 체육관 소속)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규정이다.

- 11-17, 2015.
- [7] 김태환·박대우, “신변보호사(경호사) 자격제도 도입방안”, 한국안전학회지 제20권 제2호: 146-150, 2005.
 - [8] 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정보보안 논문지 제11권 제2호: 25-33, 2011.
 - [9] 김계원·서진석,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23-48, 2013.
 - [10] 박기범, “신변보호업자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3호: 123-148, 2014.
 - [11] 이상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학회지 제14권 제6호: 35-44, 2014.
 - [12] 김일근,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자격제도 개선방안”, 융합보안학회지 제15권 제1호: 105-114, 2015.
 - [13] 정지운,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 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경호경비연구 제13권: 451-470, 2007.
 - [14] 이상철·안성조, “한국시큐리티자격제도의 실태 및 발전방안 -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 경호경비연구 제15권: 235-256, 2008.
 - [15] 김일근,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정보보안 논문지 제13권 제2호: 45-54, 2012.

[저 자 소 개]

강 동 범 (Dong-beom Kang)



2010년 8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 석사
2015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email : a039270@naver.com

김 우 준 (Woo-jun Kim)



2008년 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석사
2011년 8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범죄학 박사
現)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kimwj21@semyung.ac.kr